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2. 4. 6.(수) 15: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안형환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5시 0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김기석 행정법무담당관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2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15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개로 심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2022-16-063)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환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주)마금의 대구문화방송(주) 주식 처분 등 시정명령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주)마금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구문화방송(주)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지 않도록 해당 주식의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한다'입니다. <2> 제안이유입니다. 「방송법」을 위반한 (주)마금에 대해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경과사항입니다. 2020년 1월 (주)마금은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하여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되어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심사 결과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가능성이 낮고 방송의 소유·경영 분리원칙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변경승인 신청 거부 의견이 나왔으며, 변경승인 거부 사전통지를 받은 (주)마금은 신청을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6월 24일 위 위반사항을 사유로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주)마금은 시정명령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 등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 주요 내용입니다. <가> 피심인 일반 현황입니다. (주)마금은 문화상품 컨설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2월 말에 대구문화방송(주) 32.5%를 취득하였습니다. <나> 「방송법」 관련 규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위반사항입니다. (주)마금은 2020년 부과한 주식처분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미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얻지 않고 대구MBC의 지분을 32.5% 소유하여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주)마금의 의견입니다. 주식 매매 전문기관을 통하거나 직접 주식 인수자를 발굴하고 협의를 진행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결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5> 검토 의견입니다. 동 위반사항은 「방송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거나 「방송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마금이 지속적으로 주식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위원회의 유사 처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을 다시 부과하고, 이번 시정명령이 기한까지 초과지분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주식 처분을 위한 피심인의 노력과 이전 유사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무처의 추가 시정명령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2020년 피심인의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피심인은 조속한 주식 처분 등을 통해서 시정명령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보고사항

### 가.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보고안건 가> “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 이유입니다.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공포되었고, 그해 11월 관련 시행령을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지난주 위원회에서 부과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고시 내용은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부과기준, 부과대상 기간, 부과 시기 등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고 있고, 부과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고시에 담겨 있습니다. 다음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3~4월 중 행정예고 등 제정 절차를 마친 후 4월 중 고시안 제정안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안형환 부위원장**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4월 13일에 개최하되, 시간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2년도 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07분 폐회 】